

# 시 방 서

## 적용 제품 : 동근머리시선유도봉

[해당 시방서는 시공 방법의 개선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]

※ 개정 이력

개정날짜	개정사유	개정번호
2018.08.20.	최초작성	시방서_동근머리시선유도봉_1
2019.01.14.	재질 표기 변경	시방서_동근머리시선유도봉_2
2025.04.10.	도면 추가 및 규정 연도 변경	시방서_동근머리시선유도봉_3

신도산업(주)

# 동근머리시선유도봉 설치 시방서

## 1. 일반 사항

### 1.1 목적

이 시방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,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 등에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선유도봉의 시공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1.2 적용범위.

이 시방서는 동근머리시선유도봉의 시공 방법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.

## 2. 제품의 명칭 및 규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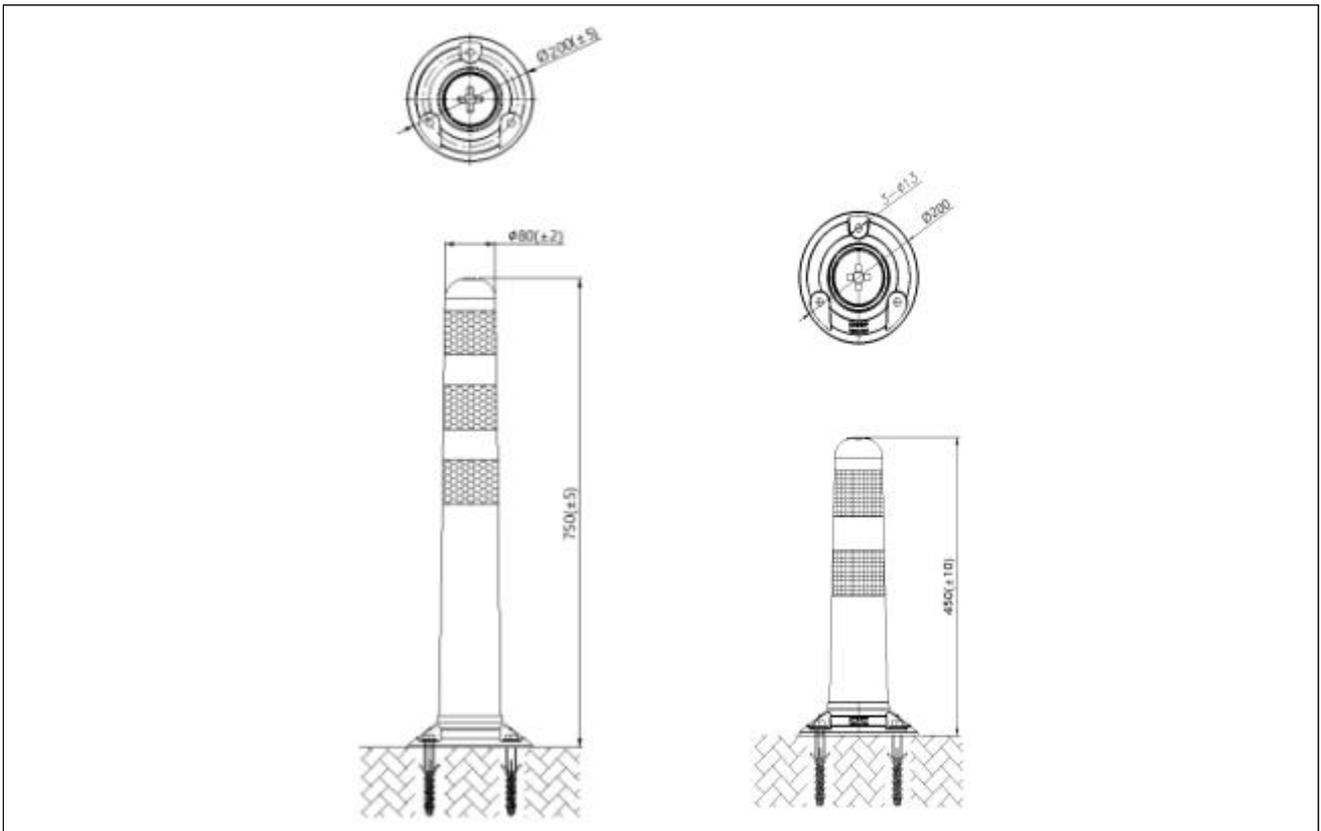
가. 명칭 : “동근머리시선유도봉”

나. 규격 :  $\Phi 200 \times \Phi 80 \times H750$  [mm]

$\Phi 200 \times \Phi 80 \times H450$  [mm]

다. 재질 : 몸체(TPU) / 반사지(고휘도)

## 3. 제품 구조도



## 4. 설치관리

### 4.1 일반 사항

- 가.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,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, 시공 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.
- 나. 설치 현장의 시공 전, 중,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.
- 다. 현장에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“특별 시방서”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.

### 4.2 안전 조치

- 가.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한다.
- 나.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.
- 다. 콘, 바리케이드, 안전펜스 등으로 작업 구간 명확히 구분하며 보행자의 통행 구역도 안전하게 확보하여야 한다.
- 라. 작업자는 안전모, 형광 조끼, 안전화,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.

### 4.3 시공 방법

- 가.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한다.
- 나.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.
- 다. 시공자는 발주처의 설계 사양에 따라 간격(곡선구간:M, 직선구간:M, 안전지대:M)을 맞추어 설치 장소를 표기한다.
- 라. 동근머리시선유도봉의 볼트 구멍 3개 중 2개는 차량 접근 방향을 향하여 위치시킨다.
- 마. 동근머리시선유도봉의 볼트 구멍과 일치하게  $\Phi 17$  드릴로 90mm 깊이로 천공한다.
- 바. 플라스틱 쇄기 앵커를 천공 구멍에 삽입한다.
- 사. 동근머리시선유도봉을 천공한 위치에 놓고 스크류 볼트( $\Phi 12 \times 80\text{mm}$ )를 임팩트 드릴에 17mm 소켓을 끼워 볼트를 조인다.  
(현장 여건 및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서 스크류볼트 고정 시 도로 면에 점착제를 사용하며, 추가적인 비용 발생)
- 아. 시공 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.
  - a) 동근머리시선유도봉의 외관상 측면(차량 진행 방향)에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.
  - b) 설계도에 표시된 규정대로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.
- 자. 주변 정리 정돈을 하고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.

## 5. 검사

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.

## 6. 유지관리

시선유도봉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유지는 국토교통부 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”을 원칙으로 한다. 지침서에 없을 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### 6.1 점검

점검은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.

### 6.2 보수

사고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.

## 7. 기타

### 7.1 기록

파손 또는 변형된 경우에 면밀히 조사하여 기록하고 개선에 반영토록 한다.

- 1) 점검 보수 시의 기록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다.
- 2) 시공상 특이점 등을 기록한다.

### 7.2 설치 관련 협조

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### 7.3 분리배출 방법

해당 제품의 폐기 시 1차 해당 지자체의 분리배출 방법을 따른다.

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 분리배출 방법은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제도에 따라 진행한다.